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703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서영교·서영석·임호선

김남근 · 김성환 · 이용우

김현정 · 송옥주 · 복기왕

박정현 · 김태선 · 조인철

이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석의 청구를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석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율하는 반면, 피해자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약 1,000억원의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한 그룹 회장이 체불된 임금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체불 임금 문제의 해결보다는 개인 채무 변제를 우선시 하는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된바 있음.

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보석 여부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장은 보석 여부의 결정 또는 구속의 취소 결정에 앞서 검사 뿐 아니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기하려는 취 지임(안 제97조의2 및 제99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 등의 의견) 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석 또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있다.
 -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제1항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③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2항과 같다.
- 제9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대 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제출한 사건에 관련된 의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석, 구속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7조의2 및 제99조의 보석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석의 청구 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 ② 제97조의2의 구속의 취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의 취소 결정을 하거나 제93조에 따른 구속 취소의 청구가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97조의2(보석, 구속의 취소와
	피해자 등의 의견) ①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법정
	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은 사건
	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석 또
	는 구속의 취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
	을 하기 전에 제1항의 의견을
	<u>청취하여야 한다.</u>
	③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2항과 같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
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	사항) ①
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피해
	<u>자, 피해자의 가족·배우자·</u>
	법정대리인 또는 고소인 등이
	제출한 사건에 관련된 의견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